대학교원 자격 인정기준(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시행세칙

제정, 시행 2019.12.1., 학교법인 동은학원 법인행정팀-461(2019.11.29.)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부령(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교육경력 및 학교장이 정하는 연구실적의 환산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경력) 교육부령(규정) 제3조제2항의 교육경력은 별표1의 1. 교육경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조 (연구실적 환산기준) ① 교육부령(규정) 제4조제2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 인정한다.

② 교육부령(규정) 제4조제1항제3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의 인정은 별표1의 '2.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교육부령(규정) 제4조제1항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별표1의 '2.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되는 경우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⑤ 별표1을 적용함에 있어서 항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예체능 및 창작실기 분야의 연구실적 환산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1일자로 시행하되, 2020.3.1.일자 공개채용부터 적용한다.

[별표1]

대학교원 자격 인정기준(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1. 교육경력	
경력내용	**환산인정율(%)**
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과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100
나. 전문대학(종전의 2년제 대학 교육대학, 초급대학, 전문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포함)과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연구실적(경력): 담당할 교과목과 관련된 연구실적 및 근무경력	
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	100
나-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	100
나-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	**환산인정율(%)**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100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100
5)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 (석·박사 과정 통합 5년 초과하지 못함)	100
6)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다-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 [연구기관은 가-3. 3)에서 정한 기관을 의미함]	**70**
다-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	**환산인정율(%)**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 근무경력	60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의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경력	초빙: 70 / 겸임: 50
3)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강사 및 시간강사 교육경력(정규 대학 수업)	50
4) 중·고등학교 교원으로서 근무한 교육경력	50
5)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50
6) 초등학교 교사 또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	50
7) 대학(전문대학)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따라 조교로 근무한 경력	2년 한 50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	50

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 (석·박사 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재학년수 × 0.7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재학년수 × 0.7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환산인정율(%)**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80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3)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4)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80
5)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80
6)「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항공법」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70
7)「국가기술자격법」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80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9)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70
10.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70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80
12.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70
13.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14.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80

※ 모든 경력연수 중 중복되는 경우 인정 환산율이 높은 경력만을 인정함.

※ 경력과 연구실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종류만 인정한다.